본 자료는 한국자산평가㈜의 내부용 자료입니다.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복사나 배포를 금합니다.



대체평가본부 RCPS 상환가능성 검토

2023.03

1 RCPS 상환가능성 검토 프로세스 개괄

상환우선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등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는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1> 상환우선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등에 대한 평가프로세스



2 상환가능성 여부 검토 기준

<표2> 상환가능성 검토 기준

No	내용
1	자본총계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RCPS가 자본인 경우) or 부채에 계상
	된 RCPS 장부금액을 자본총계에 가산한 금액이 부의 금액인 경우
2	설립된지 5년 초과
3	투자한지 2년 초과
4	영업손실 5년이상 지속
5	기타 Event로 인하여 회복이 불가할것으로 평가자가 판단한 경우
	(예: 면허 취소로 영업영위 불가, 회생절차 진행 등)

- · 1~4 모두 충족하거나 5를 충족하는 경우 상환가능성에 의문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 · 다만 1~4를 충족하였으나 상환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자가 판단한 경우 관련 근거를 남긴 후 정상적인 이항모형 평가가능

3. 상황별 RCPS 평가방법

기준 충족여부	평가방법
기준 미충족시	상환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정상기업 간주)	약정만기와 약정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이항모형 평가
기즈 ᄎ지ᅵ	상환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미래
기준 충족시	배당가능이익을 별도로 추정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충분
(한계기업 간주)	한 시점을 기대만기로 보고 이항모형으로 평가

4. 배당가능이익의 추정

시장 및 산업에 대한 분석, 평가대상 기업의 공시자료, 계량적·비계량적 정보수집, 중장기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상환우선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발행 후 미래 손익을 추정한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표 3>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1. 자본금의 액
-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미래 배당가능이익은 다음과 같이 추정하기로 한다.

<표 4> 각 시점별 배당가능이익

배당가능이익 = (기초 이익잉여금 - 전기이월 이익준비금 + 추정 당기순이익)

추정 배당가능이익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대만기로 간주하고 평가를 진행한다.